

이사회운영규정

여수시도시공사 개정 2014.4.22. 규정 제81호

제정 2017.11.17. 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한 소집의 경우에는 감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안전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의안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결의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아니 한다.

제6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단체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장·단기 차입에 관한 사항
 8.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사업의 신규참여, 추진중인 사업의 중요한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포기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12.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3.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1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경영실적
2. 감독기관의 승인·인가가 필요한 이사회 의결안건 중 승인·인가를 받지 못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한 내용
4.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정관시행규정
2. 직제규정
3. 이사회운영규정
4. 취업규정
5. 보수규정
6. 연봉제시행규정
7. 복리후생규정
8. 인사규정
9. 감사규정

제11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기록·관리하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결방법의 특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부서의 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 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간사가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통보 및 처리결과 회보)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제안부서 및 그 밖의 관계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안부서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사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록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제11조 관련)】

이 사 회 부 의 안

제 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 호
제안부서		제 안 자	
건 명			
1. 의 결 주 문			
2. 부 의 근 거			
3. 제 안 사 유			
4. 주 요 골 자			
5. 참 고 사 항			

【별지 제2호 서식(제11조 관련)】

이사회회의안 관리대장

(의결안건, 보고안건)

회의차수	년 월 일	의안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결내용

【별지 제3호 서식(제11조 관련)】

이사회소집통지서

수 신 :

다음과 같이 년도 제 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 의 안 :

의안번호	건 명	제안자	소관부서

4. 부의안건 : 붙임. 끝.

년 월 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회의장(인)

【별지 제4호 서식(제15조 관련)】

(표 지)

년 월 일

제 회 이 사 회 의 사 록

여 수 시 도 시 관 리 공 단

【별지 제4호의 2서식(제15조 관련)】

제 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상황 :

재 직 임 원			출 석 임 원		
계	이 사	감 사	계	이 사	감 사

※ 불참인원 : (명)

4. 의 장 :

5. 기록자 :

의장의 년도 제 회 이사회 개최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며, 불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여 수 시 도 시 관 리 공 단

【별제 제5호 서식(제16조 관련)】

의안심의의결록

의안번호	제 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사항 :			
의안번호	제 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사항 :			